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925,596,593 | 27,767,898 |
| 일반회계 | 737,442,937 | 22,123,288 |
| 특별회계 | 188, 153, 656 | 5,644,61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66,390,828 | 4,991,725 |
| 상수도사업 | 54,440,061 | 1,633,202 |
| 하수도사업 | 111,950,767 | 3,358,523 |
| 기타특별회계 | 21,762,828 | 652,885 |
| 주택사업 특별회계 | 3,324,324 | 99,730 |
| 교통사업 특별회계 | 12,207,215 | 366,216 |
|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| 935,051 | 28,052 |
|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| 1,028,201 | 30,846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| 2,718,446 | 81,553 |
|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| 43,000 | 1,290 |
| 대지보상 특별회계 | 219,188 | 6,576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| 252,218 | 7,567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| 1,035,185 | 31,056 |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"와 같다.
-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843,635천원으로 한다 .
-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